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
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년월일 : 2009. 2. 13
제 안 자 : 재정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   ○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재래시장 정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서울시장이 구성하는 위원회로 향후 분쟁 발생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 근거 조례가 필요하여 관련 부분을 수정하고자 함.
2. 수정의 주요 내용
   ○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존치하도록 함(안 제11조 삭제).
3. 참고사항
   가. 관계법규 : 해당 없음.
  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   다. 기　　타 : 수정안 대비표(별첨)

수정안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	**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**
제1조～제10조(생략)	제1조～제10조(원안과 같음)
제11조(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폐지) 서울특별시시장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.	<삭제>
제12조(생략)	제11조(원안과 같음)
부 칙	부 칙
제1조~제2조(생략)	제1조～제2조(원안과 같음)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행정1부시장”을 “정보화기획단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2조(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서울특별시정보격차해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”를 “「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 조례」에 따른 서울특별시정보화추진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서울특별시정보격차해소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“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3조(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위원장은 정보화기획단장이 되고”를 “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정보화기획단장이 되며”로 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(분과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추진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둔다.

1. 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추진위원회 : 「서울특별시 디지털행정 촉진 조례」에서 정한 사항
2. 서울특별시 정보격차해소위원회 : 「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」에서 정한 사항

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제1항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.

제4조(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.

제11조를 삭제한다.

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,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5조(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및 주말·체험영농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
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”을 “위원장은 경제진흥관”으로 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6조(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환경농업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

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삭제한다.

제9조 중 “판매 및 위원회 운영”을 “판매”로 한다.

제7조(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
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8조(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관계공무원,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
③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.

제9조(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축제의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시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.

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.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0조(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제3호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개최 때마다 관계공무원, 전문가, 서울특별시의회 의원, 시민대표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서울특별시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.

③ 위원은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.

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1조(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제12조 및 제15조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의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압구정아파트지구 및 이수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12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